

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 : 남궁역 의원
- 나. 의안번호 : 제2533호
- 다. 발의일자 : 2025년 3월 31일
- 라. 회부일자 : 2025년 4월 2일

2. 제 안 이 유

- 서울로 7017의 식물 성장에 따른 화분 균열, 식재기반 보완 등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바, 식물 및 화분에 관리, 화분 훼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로 7017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서울로 7017의 관리에 관한 정의를 신설함(안 제2조제3호)
- 나. 서울로 7017의 식물 및 화분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(안 제5조의2)
- 다. 서울로 7017의 행위의 제한에 화분 훼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(안 제12조제6호)

4. 참 고 사 항

- 가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- 나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물·화분 관리, 화분 훼손 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서울로 7017 이용·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‘서울로 7017’은 노후 고가도로의 구조 보강, 시설 개선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고가 보행로(’17.5.20 개장)로 운영·관리¹⁾되고 있으며,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행 및 녹지 환경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(’17.7.13)한 바 있음.
- 현재 ‘서울로 7017’이 준공 후 약 8년이 경과하고 있어 기반시설 보완 등 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으나, 현행 조례에는 ‘이용’에 관한 사항 외에 ‘관리’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.
- 따라서 본 조례안과 같이 ‘식물·화분 관리’(안 제5조의2), 화분 훼손 행위의 제한(안 제12조제1항제6호)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안전하고 원활한 시설 관리와 이용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
1) ’17.5.20.~’19.10.27. : 직영관리

’19.10.28.~’21.12.31. : 직영관리 + 민간위탁 혼합방식

’22.1.1.~’25.4.23.(현재) : 직영관리(중부공원여가센터-서울로관리사무소)